

2006년의 값진 회고

자연과학대학 박 용 안

어느덧, 2007년의 후반기에 들어서니 금년도 다 갔구나 하는 시간의 빠른 흐름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150동 명예교수연구동의 수많은 원로 교수님들이 이런 세월의 흐름을 다 같이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 20대는 시속 20킬로미터로 시간이 흐르고, 30대는 30킬로미터, 40대는 40킬로미터, 50대는 50킬로미터, 60대는 60킬로미터, 70대는 70킬로미터, 80대는 80킬로미터, 90대는 90킬로미터, 드디어 100세 때는 최고속의 100킬로미터로 세월이 흐른다는 말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0월 6일 오후 4시부터 관악 캠퍼스 교수회관 원형 식당에서 필자의 석사논문 지도 교수이시였던 정창희 교수님의 미수(米壽) 생일의 축하 파티가 제자 여러분의 뜻있는 성의로 개최되었다.

필자도 71세의 명예교수로서 이때 정 교수님의 답사 말씀이 지금과 같이 건강하게 백수(白壽)를 맞이할 때 더 훌륭한 축하 파티를 열어보자고 하시는 자신감에 넘친 말씀하셨을 때 매우 기쁘고 흡족한 기분을 느꼈던 것이다.

다음의 이야기는 2006년 작년 한해에 필자가 바쁘게 열심히 수행한 일과 임무를 요약 기술하는 것이다.

I. 필자는 2002년 2월 26일 정년퇴임에 앞서 1998년부터 계획하였던 해양정책 최고과정(Advanced Marine Policy Program: AMPP)의 개설이 서울대학교에서 가능함을 인정하고 AMPP 개설의 준비를 꾸준히 하였고, 최고과정 개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해양수산부 장관과 차관, 김재철 동원산업 회장 및 해양산업 원로

기업가 등과 협의하고 또한 이기준 총장님과 협의하였는바 결국, 총장의 승인을 득하고 2000년 3월에 첫 번째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31명의 유능한 사회지도급 인사들(국회의원, 변호사, 해양산업의 사장, 전무, 해양수산부 국장과 과장 또는 수산조합장 등)이 6개월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였다. 그 후, 최고과정은 지속하여 발전하였고 지난해 2006년에는 7기의 수료생들이 성공적으로 배출되었다. 최고과정을 시작한 본인은 2006년에도 2002년 이후 최고과정의 고문(명예교수)으로서 최고과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나의 노력을 다 하였다.

II. 필자는 제3차 유엔해양법(The 3rd United Nation Convention for the Law of the Sea: III UNCLOS의 발효 - 1994년 11월)에 따른 해양법기구인 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 of Continental Shelf: **UN/CLCS**)의 위원(Commissioner)으로 1997년 3월에 처음으로 당선되었고, 지난해 2006년에도 정규 회의 2회(8주 동안)에 참석하여 브라질 정부가 제출한 매우 까다로운 해저영토 대륙붕의 심사 문서를 심사하였다. 사실상, 필자는 1997년부터 지난해 2006년까지 10년 동안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3월과 8월 2회의 정규 CLCS 심사에 참석하여 왔으며, 매 회기마다 회의기간 동안 4주 동안 뉴욕의 호텔에서 숙박하는 관계로 이른바, 뉴욕커(New Yorker)가 다 되었다고 말 하는 분들이 많다. 필자의 연구실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구동 - 150동 101호에서 거의 매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해양법사무국에서 오는 서류 문서를 체크하며 또 최고과정 진행의 사무적 일들을 보고 있다.

이 기회에 회보를 통하여 21세기 해양질서를 주관하는 제3차 유엔해양법 320조항 중 76조에 관하여 소개하려 한다. 그런데 제3차 유엔해양법은 1994년 11월에 발효된 국제법으로서 21세기의 세계 해양질서를 새롭게 총괄하고, 인류의 해양 이용과 보전의 방법을 보다 과학적으로 규제하는 매우 중요한 국제법이다.

대륙붕해저 영토의 확장과 그 경계획정 - 세계의 모든 연안당사국 즉, 대륙붕을 가진 연안국가(Coastal State)는 200해리 바깥쪽으로 연장되는 자국 대륙붕의 해저영토를 3차 해양법 76조에 근거하여 350해리까지 경계를 획정하는 법적권원을 가진다. 따라서 350해리까지 확장되는 해저 대륙붕 영토를 소유하려면 76조

에 근거한 과학기술 지침서(UN/CLCS에서 제정한 지침서)에 근거하여 해양탐사 자료를 수행하고 그 자료에 기초하여 심사문서를 만들고 유엔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문서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Subcommission에서 세밀하고 엄정하게 심사 받게 되며 이른바, Subcommission recommendation이 전체 CLCS 본회(21명)에서 심의 통과되면, 그것으로 350해리까지의 확장된 대륙붕 영토는 국제법적으로 경계를 확정짓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대륙붕 경계획정 문서 즉, 러시아 정부와 브리질 정부가 제출한 것을 심사하였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도 남해 대륙붕을 오키나와 Trough까지 확장하여 그 문서를 유엔에 2009년 5월 12일까지 제출하고 심사 받아야 한다. 서울대학교의 150동 101호 연구실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이러한 필자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다음과 같이 소개되는 제3차 유엔해양법 제6부 76조는 독자 여러분의 지식에 유익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제6부 76조

대륙붕의 정의

1. **The continental shelf** of a coastal State comprises the sea-bed and subsoil of the submarine areas that extend beyond its territorial sea throughout **the natural prolongation of its land** territory to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 or to a distance of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where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 does not extend up to that distance.

1.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주변부의 바깥끝까지 또는 대륙주변부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 기선으로 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2. **The continental shelf** of a coastal State shall not extend beyond the limits provided for in **paragraphs 4 to 6.**

2. 연안국의 대륙붕은 제4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 밖으로 확장될 수

없다.

3. **The continental margin** comprises the submerged prolongation of the land mass of the coastal State, and consists of the sea-bed and subsoil of **the shelf, the slope and the rise**. It does not include the deep ocean floor with its ocean ridges or the subsoil thereof.

3. 대륙주변부는 연안국 육지의 해저 연장으로서, 대륙붕-대륙사면-대륙대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대륙주변부는 해저산맥과 심해저평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a)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coastal State shall establish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 margin** wherever the margin extends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by either:

4.(a) 이 협약의 목적상 연안국은 대륙주변부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로 대륙주변부의 바깥 끝(경계)을 정한다.

(i) a line deline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by reference to the outer most fixed points at each of which the thickness of sedimentary rocks is at least 1 per cent of the shortest distance from such point to the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 or

(i) 퇴적암의 두께가 그 가장 바깥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의 끝까지 연결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최소한 1퍼센트인 가장 바깥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ii) a line deline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by reference to fixed points not more than 60 nautical miles from the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

(ii) 대륙사면의 끝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4.(b) In the absence of evidence to the contrary, the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 shall be determined as the point of maximum change in the gradient at its base.

4.(b) 반대의 증거가 없는 경우, 대륙사면의 끝은 그 기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경점으로 결정된다.

5. The fixed points comprising the line of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on the sea-bed, draw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a)-(i) and (ii), either shall not exceed **35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or shall not exceed **100 nautical miles from the 2,500 metre isobath**, which is a line connecting **the depth of 2,500m metres**.

5. 제4항(a)-(i)과 (ii)의 규정에 따라 그은 해저에 있는 대륙붕의 바깥한계선을 이루고 고정점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거나 **2,500미터 수심을 연결하는 등수심선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5, on submarine ridges, the outer limit of the continental shelf shall not exceed **35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This paragraph does not apply to submarine elevations that are **natural components of the continental margin, such as its plateaux, rises, caps, banks and spurs**.

6.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Submarine Ridge에서는 대륙붕의 바깥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을 수 없다. 이 항은 해저고원·용기·캡·뱅크 및 해저돌출부와 같은 대륙주변부의 자연적 구성요소인 해저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7. The coastal State shall delineate the outer limits of its continental shelf, where that shelf extends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by straight lines **not exceeding 60M** in length, connecting fixed points, defined by coordinates of latitude and longitude.

7. 대륙붕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경우, 연안국은 경도와 위도 좌표로 표시된 고정점을 연결하되 그 길이가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직선으로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그어야 한다.

8. Informat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shall

be **submitted by the coastal State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set up under Annex II** on the basis of equitabl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The Commission shall make recommendations to coastal States on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outer limits of their continental shelf. **The limits of the shelf established by a coastal State on the basis of these recommendations shall be final and binding.**

8.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적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 한계위원회(CLCS, Commission on the Limit of the Continental Shelf)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대륙붕의 바깥한계 설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안국에 권고를 행한다. 이러한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9. The coastal State shall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charts and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geodetic data, permanently describing the outer limits of its continental shelf. The Secretary-General shall give due publicity thereto.

9. 연안국은 측지자료를 비롯하여 항구적으로 사국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표시하는 태도와 관련정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를 적절히 공표한다.

10.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question of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10. 이 조의 규정은 서로 마주보고 있건 이웃한 연안국의 대륙붕경계 획정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III.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중국의 청도소재 해양연구소 과학자 12명이 한국의 해양연구원(KORDI)의 과학자 및 대학교의 여러 과학자와 함께 황해의 해양지질과 환경에 관한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서울대학교 호암 국제회의

홀에서 개최하였는데 이 국제학술 회의는 필자의 우수한 제자들이 필자의 고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획하였던 것으로 매우 뜻 깊은 의미의 행사였고 중국의 과학자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에게 너무 고맙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표출 하는 바이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님을 비롯한 저명한 사회 지도급 인사의 축하말씀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이다. 고회의 생일을 이렇게 뜻 깊고, 감사와 축하의 분위기에서 보낸 2006년의 11월 29일은 지금도 값진 회고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된다.

IV. 호주 수도인 캔베라에 있는 호주지구과학 연구소(Australia Geoscience)를 2006년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방문하였다. 이 여행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정책수행의 일환이었다.

즉, 한국 정부가 유엔 해양법 76조에 근거하여 남해 대륙붕의 해저영토를 오키나와 해구까지 확장하여 넓은 해저영토를 경계 획정하는 그런 중요한 문서작성을 위한 준비작업의 한 단계를 위한 방문여행이었으며, 이 중요한 방문여행은 필자의 주선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호주정부의 추천으로 유엔 연안당사국 총회에서 필자와 같이 당선된 Phil Symond 박사의 조언과 코멘트를 우리의 중요 문서 관하여 받기 위한 방문이었다. 물론 필자와 Symond 박사와의 사전 협의와 동의에 근거하여 이 방문여행은 성사된 것이다. 호주 한국 대사관의 대사이신 조상훈 대사의 큰 관심과 격려로 우리 일행과 호주의 대륙붕한계위원 Symond 박사, 및 이곳 연구소의 고급 연구원을 모두 정식 외교의식에 따른 대사관저의 만찬에 초대하였다. 그것도 한국의 과학자 일행의 대표이며, 유엔대륙붕한계위원인 필자를 위한 초대장을 만들어 만찬에 초대함으로써 외교적 의식을 잘 갖춘 만찬이었다는 것에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전하며 표시하는 바이다.

위와 같이 로마숫자 표기로 4가지 값진 회고의 이야기를 2006년의 명예교수 회보에 정리하여 보았다. 사실상, 명예교수로서 매일 150동 101호연구실에서 유엔 CLCS의 임무와 최고과정 진행 임무 및 국제학술회의 등에 관한 참여사항을 다루는 것은 바쁘면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01호에 매일 나오시는

여러 원로 명예교수님들도 건강하게 열심히 연구하시는 것을 보면 서울대학교의 발전이 한층 더 확고하게 다져지는 것 같다.